

[별첨 1]

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¹⁾ [요약]

선임연구위원 류건식

선임연구원 이상우

1. 퇴직보험(연금) 가입 금융기관 변경 현황

- 보험사에 가입하였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(이하 퇴직연금 전환기업) 총 1,679개 중 설문지가 회수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퇴직보험(연금) 가입 금융기관(이하 퇴직연금사업자)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 기업이 90.1%로 나타남.

<표 1>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기업

전체 표본	변경한 경험이 있는 기업	변경한 경험이 없는 기업
314개 기업	283개 기업	31개 기업
100%	90.1%	9.9%

-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(N=283) 중에서 종전에 가입한 퇴직보험을 현재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78.4%이며, 나머지는 퇴직보험 해지 후 가입한 퇴직연금에서도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기업 중 238개 기업(84.1%)이 단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였으며, 45개 기업(15.9%)이 복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였음.
- － 단일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기업(N=238) 중 은행을 선택한 기업은 187개(78.6%), 보험사를 선택한 기업은 27개(11.3%), 증권사를 선택한 기업은 24개(10.1%)로 나타남.

1) 설문조사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<별첨 2> 참고.

<표 2>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현황

		사례수	종전 퇴직보험→ 현재 퇴직연금	종전 퇴직연금→ 현재 퇴직연금
전체 변경기업		(283)	78.4%	21.6%
퇴 직 연 금 사 업 자	보험사	(27)	81.5%	18.5%
	은행	(187)	72.7%	27.3%
	증권사	(24)	87.5%	12.5%
	개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한 기업 : 238개 기업			
	보험사+은행	(17)	100.0%	0%
	보험사+증권	(7)	100.0%	0%
	은행+증권사	(10)	90.0%	10.0%
	보험+은행+증권	(11)	90.9%	9.1%
	복수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한 기업: 45개 기업			

주: 사례수 30건 이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부족

2.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가입권유 현황

□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였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해서 변경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해서 변경한 사례가 다소 높게 나타남.

○ 즉, 기업이 먼저 알아보고 변경한 사례는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기업(N=238: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업 제외)의 47.9%인 반면,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해 변경한 사례는 52.1%(124개 기업)임.

<표 3>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가입권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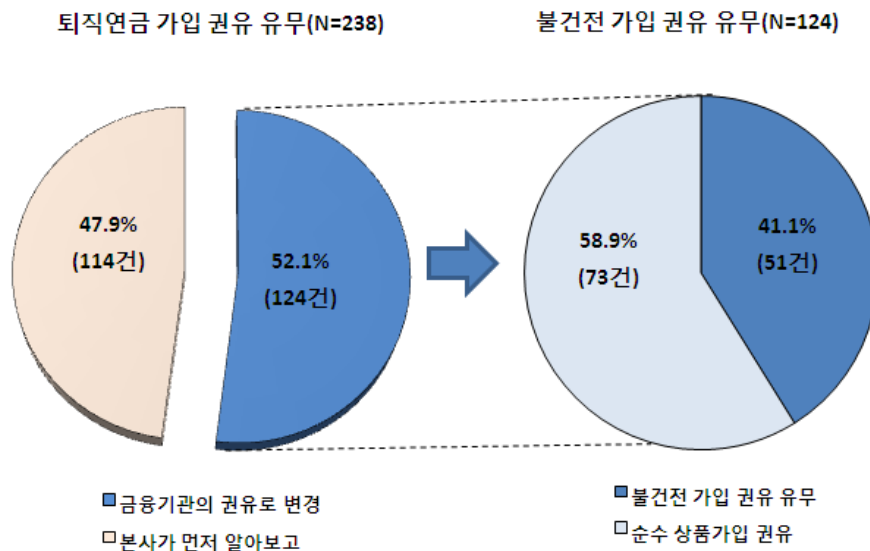
구분	N=238(사업자 변경기업)		N=124(권유 가입기업)	
	회사가 먼저 알아보고	금융기관 권유에 가입	순수 상품 권유	불건전 가입 권유
사례수(기업수)	114개	124개	73개	51개
비중	47.9%	52.1%	58.9%	41.1%

○ 특히 금융기관 권유에 의해 가입한 기업(N=124) 중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*로 인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비중은 41.1%인 51건에 이르고 있음.

*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로 다음과 같은 유형임.

- ①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
- ②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
- ③ 신규 대출 요청 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
- ④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
- ⑤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 등

<그림 1> 퇴직연금제도 권유 및 불건전 가입권유 실태



3. 금융권별 불건전 가입권유 실태

□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기업(N=238건)중 은행, 보험사,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은 각각 46개(19.3%), 3개(1.3%), 2개(0.8%)인 것으로 나타남.

○ 따라서 퇴직연금의 불건전 가입권유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보험사 및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함.

○ 특히 전체 불건전 가입권유 건수(N=51)중에서 은행의 불건전 가입권유 건

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.2%에 이르고 있어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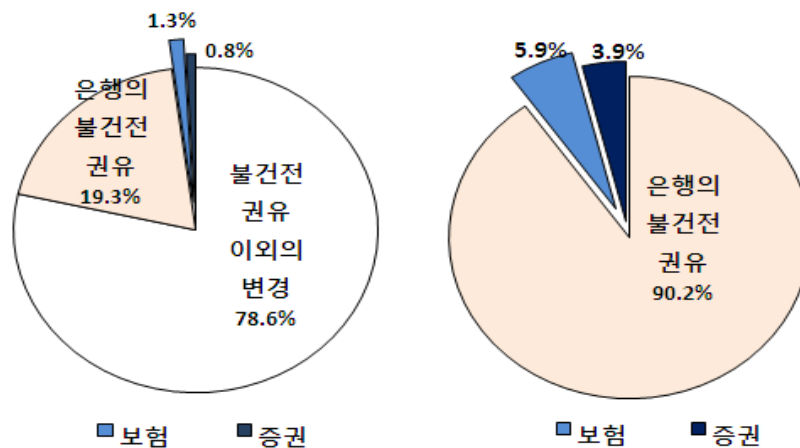
<표 4> 금융권별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(사업자 변경기업 기준)

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기업 ^{1,2} (A)	불건전 가입권유로 가입한 기업수 (B)			
	은행	보험사	증권사	계
238	46 (90.2%)	3 (5.9%)	2 (3.9%)	51 (100%)

주: 1) 보험+은행 등 처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기업 제외
2)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부족(표본수 30개이하)

<그림 2> 금융권별 퇴직연금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

퇴직연금 변경 기업 대상(N=238) 불건전 가입권유 변경 기업 대상(N=51)



4. 퇴직연금사업자 서비스 제공 실태

-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50% 이상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사항 안내(67.5%),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·보관·통지(58.6%), 가입자 교육(54.8%), 종업원 설명회(51%)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제도설계 컨설팅(45.5%),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(42.7%), 투자성향 분석 및 운용 지시(41.1%), 취급실적 안내(40.1%) 등과 관련 서비스는 40% 이상이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.

<표 5>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태

(단위: %)

서비스 항 목	계약사항 내	운용현황 기록·보관· 통지	가입자 교 육	종업원 설명회	제도 설 계	운용방법 선정 및 변 경	투자성향 분석 운용지시	취급실적 안 내
%	67.5	58.6	54.8	51.0	45.5	42.7	41.1	40.1
서비스 항 목	적립비율 변경안내	운용방법 제 시	자 산 운 용 보고서	수 탁 회 사 보고서	재계산	재 정 건전성 검 증	연 금 계 리 서비스	기타
%	31.2	27.7	25.5	23.9	20.4	12.4	8.3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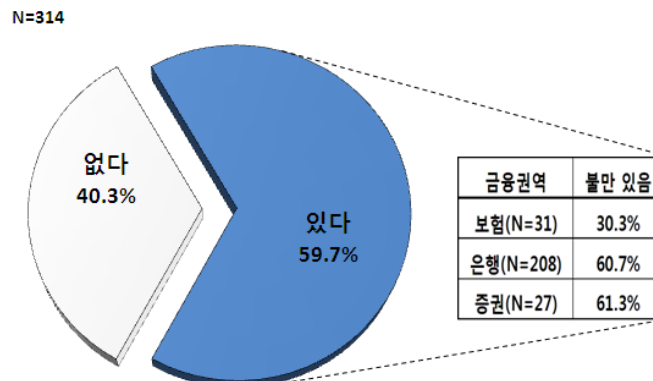
주: 복수응답 포함

- 이에 반해 연금계리 서비스(8.3%), 재정건전성 검증(12.4%) 등은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.
- 특히 수탁회사 보고서(23.9%),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(27.7%), 적립비율 변경 안내(31.2%), 자산운용 보고서(25.5%) 등과 관련된 서비스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5.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사항 및 변경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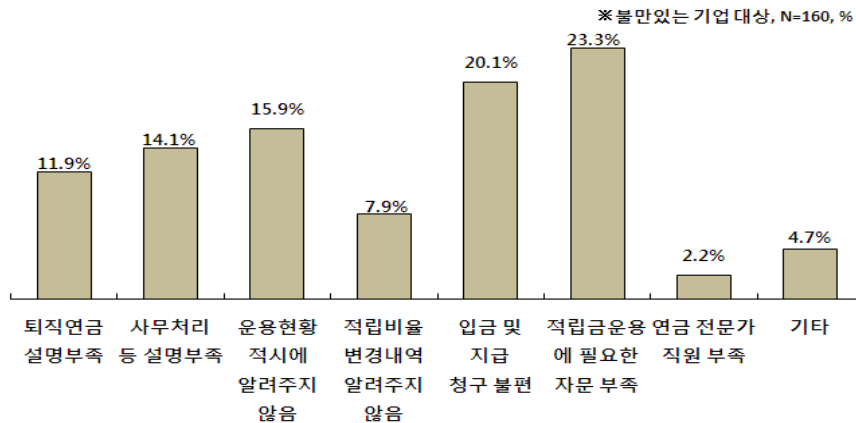
- 현재 거래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기업의 약 59.7%가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됨.
-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.7%,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.3%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,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.3%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.

<그림 3>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 유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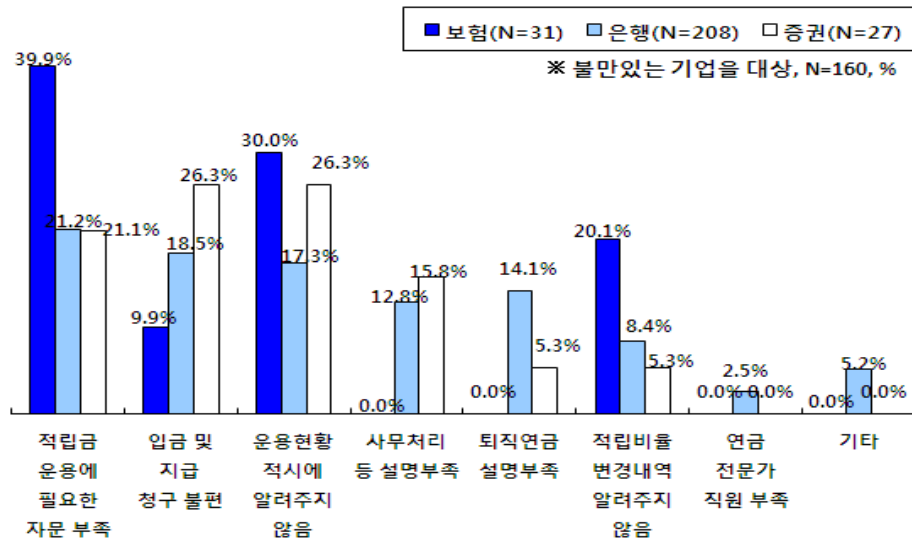
- 주요 불만 이유로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자문 부족(23.3%), 입금 및 지급 청구 불편(20.1%), 운용현황 보고 취약(15.9%) 등임.
- 반면에 연금전문가 직원 부족,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 정도가 낮게 나타남.

<그림 4>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사항



- 금융기관별 주요 불만이유를 보면 은행이 퇴직연금 설명 부족(14.1%), 연금 전문가 직원 부족(2.5%) 등에 대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 정도를 나타내는 등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을 보임.
- 보험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자문 부족(39.9%), 운용현황을 적시에 알려주지 않음(30%), 적립비율 변경내역을 알려주지 않음(20.1%) 등이 상대적으로 불만정도가 높은 반면, 사무처리 설명 부족, 퇴직연금 설명 부족, 연금전문가 등의 항목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- 증권사의 경우 입금 및 지급 청구불편(26.3%), 사무처리 방법 등 설명부족(15.8%) 등이 상대적으로 불만정도가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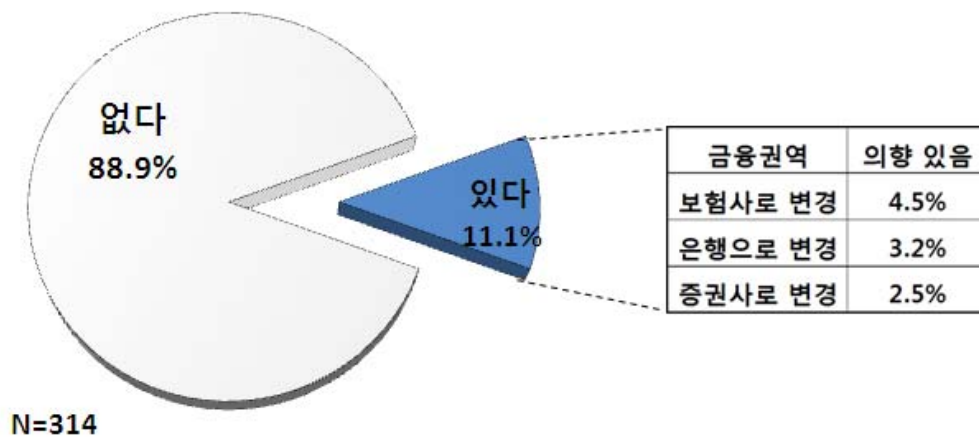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금융기관별 불만사항



□ 반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88.9%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변경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은행(3.2%) 및 증권사(2.5%)보다 보험사(4.5%)로 변경할 의향이 크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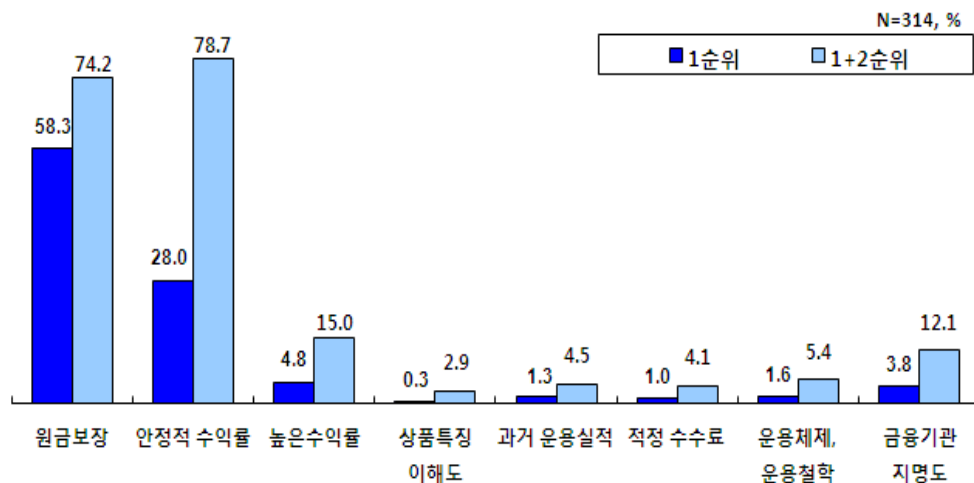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향후 사업자 변경의향 유무



6. 퇴직연금상품 선택시 중요도

- 기업들의 퇴직연금상품 선택시 중요 고려요인은 원리금 보장 가능성(58.3%), 안정적 수익률(28.0%)로 나타난 반면, 높은 수익률(4.8%), 금융기관 지명도(3.8%)는 고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체계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금제도 초기에는 정성적 기준이 주요 선택고려 요인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원금보장 가능성 여부를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고 있고, 안정적 수익률은 소기업이, 높은 수익률은 대기업이 높게 고려하고 있음.

<그림 7> 퇴직연금 상품 선택 고려요인



<표 6>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상품 선택 고려요인(1순위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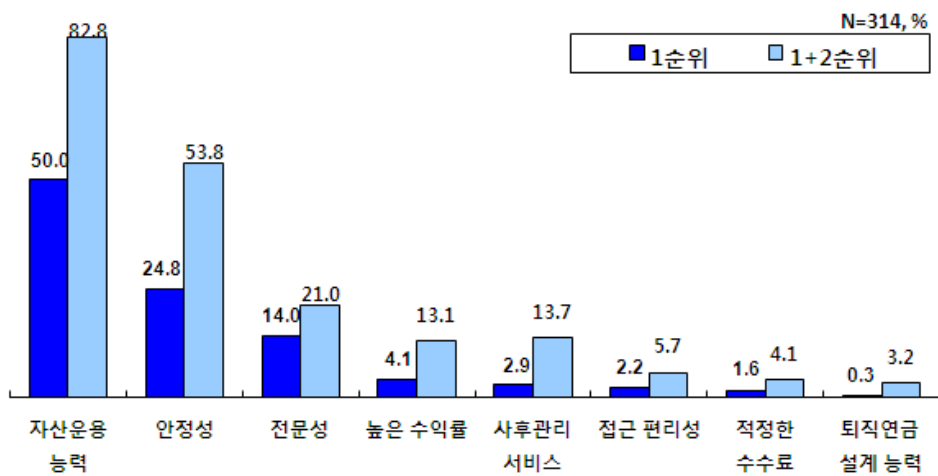
구 분	원금보장 가능성	안정적 수익률	높은 수익률	기타
대기업(N=47)	59.6	27.7	6.4	6.3
중소기업(N=202)	61.4	25.7	4.0	8.9
소기업(N=65)	47.7	35.4	6.2	10.7

7. 금융기관 선정시 고려사항

□ 대체로 안정적인 운용능력, 안정성, 전문성, 서비스 능력, 단기수익률 등이 기업들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주요 고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.

○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을 퇴직연금사업자의 최우선 선정 고려요인으로 삼고 있어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능력 제고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음.

<그림 8>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고려요인



□ DB형 가입기업은 안정적 자산운용(47.2%), 금융기관의 안정성(26.9%), 전문성(14.2%), 단기운용성과(5.2%)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으로 우선하고 있음.

○ DC형 가입기업은 안정적 자산운용(54.9%), 금융기관의 안정성(18.6%), 전문성(15.9%), 서비스 능력(3.5%) 을 퇴직연금 사업자시준으로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표7> 퇴직연금 상품별 선정 고려요인(1순위)

(단위: %)

구분	연금사업자의 전문성	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	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	높은 수익률	기타
확정급여형(N=212)	14.2	47.2	26.9	5.2	6.5
확정기여형(N=113)	15.9	54.9	18.6	3.5	7.1

[별첨 2]

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

조사 대상	▪ 퇴직보험 해지 후 퇴직연금으로 전환 가입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 ▪ 총 1,679개 사업장(2009.8.31)
회수결과/ 조사규모	▪ 유효표본: 314개 사업장 ※ 비수신, 부재중, 결번, 폐업 등의 원인으로 18.7% 회수
조사 방법	▪ 1:1 개별면접조사 및 FAX 등 조사 병행
조사 기간	▪ 2009년 9월 1일~9월 16일(약 15일간)
조사 기관	▪ (주)코리아리서치센터